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66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김정호·최기상·허종식

정성호 • 이연희 • 이훈기

박희승 • 박 정 • 임미애

박해철 • 어기구 • 유후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

요가 있음.

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,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8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"을 "60세 이상인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 및 자립준비청년 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)"으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 의8의 개정규정 중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이 후 고용하는 자립준비청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	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
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	
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	
하 이 조에서 같다)의 <u>2025년</u>	<u>2028년</u>
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	12월 31일
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	
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	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	
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	
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	
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	
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	
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	
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	
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	
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	
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	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	1
근로자, <u>60세 이상인 근로자</u>	<u>60세 이상인 근로자,</u>
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	경력단절 여성 및 자립준비청

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상시 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 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 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45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550만원)]을 곱한 금액

<u>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,</u>
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
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
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
소한 사람을 말한다)
2. (현행과 같음)

2. (생략) ② ~ ⑧ (생 략)
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